



제 417국회 (정기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부업 방송광고 시 과도채무 위험성 등 음성전달 의무화〉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51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19.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부업자등이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도지사등이 광고의 중단을 명령하거나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부조건외 게시와 광고) ① ~ ④ (생략) <u><신설></u>	제9조(대부조건외 게시와 광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부업자등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제4항에 따른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항----- -----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0. (생략) ③ (생략)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6항----- ----- 9. ~ 12.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 광고의 음성전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대부업자등(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이 광고를 하는 경우, 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에 관한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명령 불이행 시 시·도지사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표 1] 대부업자등의 광고 시 포함사항

대부업자 (법 §9②)	대부중개업자 (법 §9③)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좌동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좌동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좌동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u>대부업자</u> 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u>대부중개업자</u> 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히,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① 경고문구의 글자크기를 상호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하고(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 ②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방송광고 시 관련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3) 경고문구 역시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또한,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평일 07~09시와 13~22시, 토요일·공휴일 07~22시에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현행법이 방송광고 시 경고문구를 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방송광고에 문자로만 경고문구를 표기하면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광고 시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대부계약과 관련된 개인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및 대부·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음성으로도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의 내용과 그 효과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②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③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 하나로,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④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⑤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중 하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별표 1).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5) 제9조(대부조건외의 게시와 광고)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이용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 다만, 지나친 대부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과거와 달리,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업 방송광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86,207회에 달하던 TV광고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3년부터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방송광고 시 경고문구를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의무화하여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대부업 TV광고는 2015년 대부업법 개정(방송광고 시간 제한), 2017년 대부업계의 방송광고 자율감축방안 시행, 대부업 시장 위축, 인터넷광고 등 방송광고 외 광고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대부업 방송광고 집행현황

(단위: 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上
방송광고 횟수	286,207	157,343	120,449	96,327	98,761	56,257	0	0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대부업체의 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① 대부업체의 총 광고비가 2017년 474억원⁶⁾에서 2023년 7억원으

로 빠르게 감소하였고 ② 방송광고와 방송광고 외 광고의 비중도 2017년 57:43(방송:방송외)에서 2019년 46:54로 역전된 뒤, 2023년부터는 모두 방송 외 광고로만 집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겠음.

[표 3] 대부업 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Q1
방송 광고	· 공중파	0	0	0	0	0	0	0	0
	· 종편	7,086	2,796	1,970	1,530	1,126	1,185	0	0
	· 케이블	19,883	12,034	8,822	7,230	6,195	2,685	0	0
	소 계	26,969	14,830	10,792	8,760	7,321	3,870	0	0
방송 광고 외	· 인터넷	16,603	9,697	11,439	11,665	11,243	7,518	675	243
	· 대중교통	150	214	0	0	0	0	0	0
	· 신문· 무가지	20	20	10	2	5	4	0	0
	· 기타 수단	2,576	1,215	1,351	1,664	1,203	363	0	0
	· IPTV	1,153	300	115	0	0	0	0	0
	소 계	20,502	11,446	12,915	13,331	12,451	7,885	675	243
총계		47,472	26,275	23,707	22,091	19,772	11,755	675	243

(자료: 금융위원회)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① 현재 협회가 광고자율심의제를 통하여 대부광고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고 ② 대부업과 동일하게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이나 상호저축은행은 방송광고 관련 법률적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⁷⁾ 음성전달의무를 법제화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협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 대부업체의 광고비 집행액은 2014년 807억원, 2015년 739억원에 달하였음.

7) 현재 여신전문금융업과 상호저축은행은 방송광고에 관한 규제가 없고, 보험회사는 협회 자율규제(생명(손해)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에 음성표시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광고의 특수성과 음성전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30초 이상 방송광고 등에 한하여 음성전달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와 2023년 이후 대부업 방송광고 중단에 따른 입법의 실효성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동 개정안은 제21대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06

8) 의안번호 제2101660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